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1월분 기초생계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2016년도 1월분 기초생계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지 급 액 : 금2,404,378,570원(금이십사억사백삼십칠만팔천오백칠십원)

※ 보조비율 : 국비 1,442,627,140원(60%), 시비 673,226,000원(28%), 구비 288,525,430원(12%)

2. 집행내역 (단위:원)

예산액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잔액	비고
30,206,280,000	0	2,404,378,570	27,801,901,430	

3. 지급대상 : 5,318세대(첨부참조)

4. 생계급여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5. 지 급 일 : 2016.1.20.(수)(지급일 전인 19일에 예약이체, 20일 09:00시 입금요청)

6.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생성된 생계급여액을 개인별 지정계좌로 e-뱅킹 입금

7.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생계급여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붙임 1. 2016년 1월 기초생계급여 계좌입금의뢰서 1부
 2. 2016년 1월 기초생계급여 지급 현황1부
 3.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업 추진계획 1부
 4. 2016년 1월 일반수급자 급여 교부 알림 공문 1부
 5. 2016년 1월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 교부내역 1부. 끝.

